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1. 3. .

제안자 : 국토해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8일 현기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10년 8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로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의2 삭제)

- 1)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익히지 아니하고도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 2)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안 제18조 신설, 안 제30조의2)

-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여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으며,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함.
-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1) 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추가(안 제40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0조)

마.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부칙 제5조제2항)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등과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지도·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

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격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격)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자격증의 부당 사용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

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실무수련 및 시험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과목,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제3장의2(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장(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 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징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

속된 건축사가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 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장부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장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조의2(건축사의 연수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5장의2(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징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를 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도지사 또는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

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0조의4(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 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6장의2(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보칙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수련자”라 한다)의 관리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42조를 제40조로 하고, 제40조(중전의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

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시험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종전의 제15조의2
3.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
4. 응시 수수료: 종전의 제17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 제15조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6조(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375 477 603 517">第1章 總 則</p> <p data-bbox="212 618 767 925">第1條(目的) 이 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u>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도모함</u>을 目的으로 한다.</p> <p data-bbox="212 1025 767 1200">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u>定義</u>는 다음 各號와 같다.</p> <ol data-bbox="248 1227 767 1942"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248 1227 767 1534">1. “<u>建築士</u>”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u>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業務</u>를 行하는 者를 말한다.<li data-bbox="248 1630 767 1942">2. “<u>建築士補</u>”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u>建築士業務</u>를 보조하는 者중 <u>國家技術資格法</u>에 의하여 <u>建築, 土木, 電氣,</u>	<p data-bbox="986 477 1174 517">제1장 총칙</p> <p data-bbox="799 618 1370 992">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 data-bbox="799 1025 1370 113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data-bbox="836 1227 1370 1942"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836 1227 1370 1601">1. “<u>건축사</u>”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u>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data-bbox="836 1630 1370 1942">2. “<u>건축사보</u>”란 제23조에 따른 <u>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으

機械, 化工 및 세라믹, 通信, 環境, 에너지, 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의 技術士, 技士 또는 産業技士 자격을 취득하거나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 者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3. “設計”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를 위한 圖面·構造計劃書 및 工事示方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工事に 필요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서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등과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

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지도·조언하는 행위

4. “工事監理”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建築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第4條(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는 建築物의 建築 등에 대한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第5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국

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建築士協會(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第2章 자 격

第7條(建築士資格등의 취득) 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삭 제>

제2장 자격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建築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 建築士補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8條(資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建築士가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死亡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9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資格을 취득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 또는 建築法の 規定에 의한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삭 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의2.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建築士資格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10條(資格證등의 부당행사금지) 建築士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資格의 取消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資格을 취득한 事實이 判明된 때

2. 第9條第2號 또는 第3號에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자격증의 부당 사용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게 된 때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行使한 때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業을 영위한 때
5. 당해 建築士에게 責任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 받은 때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が 不實하게 되어 着工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潰를 야기하여 公共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삭 제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は 그 取消된 날로부터 15日내에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第12條(建築士 명칭의 사용금지)

①建築士가 아닌 者は 建築士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 제

第3章 試 驗

第13條(試驗의 내용과 施行) ①

建築士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은 設計 및 工事監理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에 관하여 행한다.

②第1項의 試驗은 每年 1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한다.

에 중대한 손괴(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

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실무수련 및 시험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

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

第14條(建築士資格試驗)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
니면 建築士資格試驗에 應試
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建
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 자
로서 建築士豫備試驗 응시
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研究
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이 있는 자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外國에서 建築士免許를 받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과
목,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
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
사 자격시험은 건축사업무 수
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
하여 실시한다.

거나 資格을 취득한 者로서
通算하여 5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이 있는 者

<신 설>

②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者
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資格試
驗의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15條(建築士豫備試驗) ①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豫備試驗에 應
試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建築에 관한 소
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專門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
業한 者 및 高等教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
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

②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1
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
행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
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삭 제>

서 2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3. 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 技術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初·中等教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4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4. 삭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 豫備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國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豫備試驗合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15條의2(不正行爲者에 대한 制裁)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 資格試驗 또는 建築士豫備試驗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應試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停止시키거나 無效로 하며, 당해 試驗施行日부터 3年間 試驗應試資格을 停止한다.

第16條(試驗科目등) ① 建築士 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의 試驗科目・試驗方法・經歷의 인정基準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신 설>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신 설>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신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고를 하는 사람

<신 설>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신 설>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신 설>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

<신 설>

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第19條(業務內容) ①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②建築士는 第1項의 業務를 행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

1.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관한 事項
2. 建築物의 現場調査·檢査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 이 法 또는 建築法과 이 法 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기준등에서 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4. 기타 다른 法令에서 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 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20條(業務상의 誠實義務等) ① 建築士는 建築物이 이 법·建築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建築士補는 建築士의 業務를 보조함에 있어 이 法 또는 建築法에 적합하도록 그 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第21條(表示行爲) 建築士는 建築物에 관한 設計를 한 때에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一部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2條의2(資格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取消나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 또는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建築士는 그 처분전에 契約을 체결한 業務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建築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는 그 業務를 完成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 본다.

第5章 建築士事務所

第23條(建築士業務申告등) ①建築士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建築士事務所에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建築士(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業務를 보조하는 建築士 및 建築士補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징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

③ 外國의 建築士免許 또는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建築士事務所開設者와 공동으로 建築物의 設計・工事監理業務를 受任하는 경우에 한하여 建築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外國의 建築士免許 또는 資格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建築士事務所の 명칭에는 “建築士事務所”라는 用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建築士業務申告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外國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外國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삭 제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고자 하는 建築士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4號의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建設技術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된 建築士가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責任監理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特殊建築物 또는 特殊構造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에 소속된 建築士가 당해 建設業者 또는 당해 建設業者의 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建築物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⑨ 第8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工事監理는 이를 당해 建設業者에 소속된 建築士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申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業務申告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신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 다)를 할 수 없다.

<신 설>

-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받고 그 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
- 4. 이 法 또는 建築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5. 2이상의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하는 자
-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第27條(建築士業務申告 事項의 變更 또는 休業·廢業등의 申告) ①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姓名·建築士事務所 소재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을 變更하거나

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사람
-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삭 제

第28條(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등을 한 사실이 判明된 때
2. 이 法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3.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建築士가 계속하여 그 業務를 수행한 때

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建築物의 構造상의 안전에 관한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5. 年 2회 이상 建築士의 業務 停止命令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通算하여 12月 이상 이 된 때

6.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 제

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의 변경등을 허위로 申告한 때

9.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의 規定에 위반한 때

11. 삭 제

1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삭 제>

<삭 제>

正命승에 불응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建築士에 대한 業務停止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가 소속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의 業務補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建築士 및 建築士補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20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設計 또는 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建設工事が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의한 命令이나 建築法の 規定에 위반한 때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命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기준·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의 取消

<신 설>

2.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 상실처분

第29條(建築士業務申告簿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簿에서 당해 建築士事務所에 관한 申告事項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장부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장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

1.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 상실처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死亡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廢業등의 申告가 있을 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을 때

第30條(보고·檢査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때에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關係人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0條의2(建築士등의 研修教育)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나 이에 소속한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에

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조의2(건축사의 연수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18

대하여 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研修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修教育의 施行을 建築士協會 기타 建築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5장의2 징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도지사 또는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신 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0조의4(징계위원회) ① 징계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第6章 建築士協會

第31條(建築士協會) ①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建築士의 品位保全·業務改善 및 建築技術의 研究·開發을 통한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建築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建築士協會는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31條의2(사업) ①建築士協會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建築物에 관한 調査·研究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規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 호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建築物의 品質 및 施工技術의 향상을 위한 指導
3. 建築士業務의 개선·발전
4. 會員의 品位保全 및 倫理 확립
5. 建築士 및 建築士補의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
6. 會員의 福祉向上 및 年金制度 운영
7.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建築士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 國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規約의 내용,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國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 규약의

共濟金, 共濟料等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第32條(主事務所와 支部) ①建築士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第33條(會員) ①建築士로서 建

築士業務申告를 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②建築士로서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

③ 삭 제

④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資格이 取消 또는 消滅된 者 또는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者등 建築士業務申告가 抹消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 또는 準會員의 資格을 상실한다.

第34條(任員) ①建築士協會에

任員으로서 會長·副會長·理事 및 監事를 두고 任員의 定員·任期·選出方法등은 定款으로 정한다.

②會長은 建築士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③副會長 1人은 常勤으로 한다.

④建築士協會는 會長 또는 副

<삭 제>

<삭 제>

會長을 選出한 경우에는 그 姓名과 任期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5條(委任規定) ① 建築士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과 事業 種目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建築士協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 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6條(民法規定의 適用) 民法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限 建築士協會에 이를 適用한 다.

第38條(設立의 認可 및 公告) ① 建築士協會는 제23조에 의하 여 신고한 建築士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받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참석하 는 創立總會를 개최하고 그 創立總會에서 出席人員의 3분의 2 이상 贊成으로 定款을 作成한 后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받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建築士協會가 設立된 후 任員이 選任될 때까지의 建築士協會의 事務는 發起人이 行한다.

<신 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設立을 인가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公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협회가 設立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6장의2 보칙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

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 수련자”라 한다)의 관리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

<신 설>

제7장 罰 則

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의 資格을 취득하거나 建築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

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
를 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
용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
에서 정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者
및 그 相對方

<신 설>

<신 설>

4.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者
5.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
니하고 建築士의 業務行爲
를 한 者
6.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業
務停止命令에 違反한 者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
람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
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
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
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
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
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
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

7.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가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부당한 金品을 授受·요구한 때 또는 第3者에게 부당한 金品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第41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1. 제12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② 第8條第3項·第11條第3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過怠料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建築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建築사, 建築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가. 부당하게 金品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金品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建築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2條(兩罰規定) 建築士事務所開設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開設者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違反行爲를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建築士事務所의 開設者에 대하여도 各 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